

○ 전문위원 김영만 1991년 11월 12일 忠淸北道 教育監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회부된 忠淸北道 教育監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檢討報告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忠淸北道教育監表彰條例中 改正條例案

1. 제출자 : 忠淸北道 教育監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3. 提案事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47호, 91. 3. 8)施行으로 從前의 각 시, 군 教育廳 표창 條例가 폐지됨에 따라 산하 教育廳등 各급 教育행정기관에서 同法 및 정부표창 規定에 의거 위임 또는 규정된 표창에 관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 改編(대통령령 제13451호, 91. 8. '6)에 따른 補助機關의 名稱을 變更하기 위해 條例를 改正함.

4. 主要骨子

가. 題名을 "忠淸北道 教育행정기관 표창조례"로 함.

나. 표창권자를 "教育監"에서 "各 기관장"으로 變更하므로써 표창권자를 확대함.

다. 표창 추천권자에 도 本廳의 각 담당관을 추가함.

라. 표창 및 표창추천 대상자를 심사, 決定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여 두는 各 機關 公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명시함.

5. 檢討意見

忠清北道 教育監 표창 조례중 改正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 법의 改正 시행에 따라 시, 군 教育廳 표창조례가 폐지되고 산하 교육청등 각급 교육 행정기관에서 정부표창 規定에 의거 위임 또는 규정한 표창에 관한 각종 事項을 정하고 직제 改編에 따른(대통령령 제 13451호) 補助機關의 名稱을 變更하여 표창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效率化를 기하는 것으로 본 改正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 별첨

7. 관계법령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教育廳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忠清北道 教育監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討論을 終結하고 의결코져 합니다. 忠清北道 教育監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말씀)

이의가 없으시면 忠清北道 教育監 표창조례중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결된 本廳조례안 2건과 教育청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 할것이며

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運營委員會의 協議를 거쳐 제2차 本會議에 議決을 要求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7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수 : 9명

한장훈 안상열 권용하 육봉호 김경희 차주원 봉하용 박기양 김재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 출석공무원수 : 4명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세용
관리국장 김근학
총무과장 이근수